

담양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

「담양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「지방자치법」 제7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.

2025. 10. 2.

담양군의회 의장



1. 조례명 : 담양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2. 제안이유

- 상위법인 「지방세기본법」 개정으로 납부지연가산세 부과 세액이 상향됨에 따라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는 기준 금액도 이와 동일하게 적용하여 개정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일반우편으로 송달 할 수 있는 납세고지서 등의 1매당 세액기준을 상향(안 제5조)
 - (현행) 30만원 미만 → (개정) 45만원 미만

4. 입법예고 기간 : 2025. 10. 2. ~ 10. 10.(8일간)

5. 의견제출

- 이 개정안에 대하여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0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담양군의회 의장(참조 : 의회사무과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

나. 성명(기관·단체의 경우에는 기관·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 및 주소

다. 보내실 곳 : 담양군의회 의회사무과

- 전라남도 담양군 담양읍 추성로 1371
- 전화 : 061-380-3507~8(FAX 061-380-3590)

라. 의견제출 방법 : 전화, FAX, 직접방문, 우편

6. 조례안 : 붙임 참조

□ 의견제출 서식

의견서		
1. 조례안	담양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	
2. 의견	관련조문	의견
3. 기타		
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. 2025년 10월 일 의견 제출인 주소 (전화 :) 성명 (서명 또는 인) 담양군의회 의장 귀하		

담양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담양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1항 후단 중 “30만원”을 “45만원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5조(서류송달의 방법) ① 법 제 30조제1항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또는 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. 이 경우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또는 등기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되 1매당 세액이 <u>30만원</u> 미만이면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.	제5조(서류송달의 방법) ① ----- ----- ----- --. ----- ----- ----- ----- <u>45만원</u> - ----- -----.
② · ③ (생 략)	② · ③ (현행과 같음)